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여성의원 협의체 설립 근거 마련〉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36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춘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7.
3. 회부연월일 : 2024.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협의체, 시·도의회의 의장협의체,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및 시·군·구의회의 의장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고,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지방의회의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근거가 없어 법령에 관한 의견 제출 등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여성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 여성의원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이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2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도의회 의원 및 시·군·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 간의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 182조).

현행	개정안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원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 <신설>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는 그들 모두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체·연합체의 대표자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 -----의장 등은-----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시·도의회 의원 6.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밝혀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① 시·도지사, ② 시·도의회의 의장, ③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④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간의 전국적 협의체 및 그들 모두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개정안은 여성 지방의회의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 여성의원 및 시·군·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 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지방의회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²⁾하고, 법령에 관한 의견 제출 권한 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³⁾.

1) 참고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991년부터 설립·운영되었으며, 1999. 8. 31. 시행된 「지방자치법」(법률 제6002호)에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2000년부터 법정단체가 되었음.
2) 여성 지방의회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의원, 여성가족분야 상임위원회 등의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임혜경, 「광역의회 여성의원의 의정활동 강화 방안 연구: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18).

참고로, 현재 여성 지방의회의원은 광역의회 171명, 기초의회 987명이고, 전체 의원 수 대비 여성의원의 비율은 광역의회 19.5%, 기초의회 33.1%로 이는 2014년(광역의회 13.8%, 기초의회 25.1%)에 비해 각각 41%, 31.8% 증가한 수치임.

<민선 7기~9기 지방의회의원 성별 현황>

(단위: 명, %)

		7기 전반기 (14.7~16.6)	7기 후반기 (16.7~18.7)	8기 전반기 (18.7~20.6)	8기 후반기 (20.7~22.6)	9기 전반기 (22.7~24.6)	9기 후반기 (24.7~26.6)
광역 의회 의원	여성	110	116	160	160	173	171
	남성	684	674	674	667	704	702
	합계	794	790	834	827	877	873
	여성 비율	13.8	14.6	19.1	19.3	19.7	19.5
기초 의회 의원	여성	729	726	897	884	994	987
	남성	2,169	2,153	2,029	2,033	1,993	1,989
	합계	2,898	2,879	2,926	2,917	2,987	2,976
	여성 비율	25.1	25.2	30.6	30.3	33.2	33.1

※자료: 「지방의회 현황」, 행정안전부

- 3) 참고로, 현재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에서는 전국 여성 지방의원 간 협력·연대 활동 강화를 위하여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제9장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제29조(구성) 전국 여성 지방의원 간 원활한 협력·연대 활동 강화를 위하여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를 둔다.

제30조(기능)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여성 지방의원 간 원활한 협력·연대 활동 강화
2. 전국 여성 지방의원 대상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건비(1인)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시군자치구의
회의장협의회와의 기능적 중첩, 운영상 차별화 및 조화방안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시도의회·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여성의원협의회 비교>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 · 시군자치구의회 여성의원협의회
설립목적	시도회의의장 교류·협력증진 공동 문제 협의	시군자치구회의의장 교류·협력증진 공동 문제 협의	여성의원 교류·협력증진 공동 문제 협의
구성원	시도회의의장 17인	시군자치구회의의장 226인	광역의회 171인 기초의회 987인 (9기 후반기 기준)
역할	- 지방자치 발전·지방의 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 - 의회 공동의 문제협의 - 주민의 복리증진 향 상과 지방의회의 원활 한 의정활동 제고를 위한 노력 -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을 위한 불합리한 법 령 및 제도 개선 - 선진 의회모델 연구, 검 토 및 지방자치발전 제고 - 지방자치제도 발전방 안 조사, 연구 - 지방자치에 관련된 각 종 정보, 자료수집 교환	- 시·군·자치구의회 의 견수렴, 국회 및 중앙 정부 등 관계 기관 건 의 ·조정 - 시·도 및 시·군·자치 구 공통 관심사항 협 의·조정 - 시·군·자치구의회 위 상정립, 기능강화, 의 정활동 지원 - 지방자치제도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 지 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 그 밖에 협의회 발전 을 위한 모든 사업	(협의회 신고에 따름)
설립절차	협의체 설립 후 대표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		
권한	-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 제출 - (국회)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의견 제출		

※자료: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회의의장협의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남성의원들과의 형평성, 협의체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